

제5장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제1절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범위

구분	비고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사적연금	·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 ①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의 과세이연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②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공적연금 제외) 중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은 금액 ③ 운용수익: 연금계좌의 운영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④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

2. 비과세 연금소득

- ①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③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3.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각종 연금은 기여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대신 각종 연금 수령시에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령연도 과세방식).

구분		납입연도의 소득공제	수령연도의 소득구분	
			연금 수령 시	연금외 수령 시
공적연금		납입액 전액을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소득	퇴직소득
사적연금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금액)	납입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납입액을 연 400만원 한도에서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소득
	운용수익	-		기타소득

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제외)-연금소득공제

(1)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공제한다. 다만 900만원을 초과하면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text{만원} + (\text{총연금액} - 350\text{만원}) \times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text{만원} + (\text{총연금액} - 700\text{만원}) \times 20\%$
1,400만원 초과 4,100만원 이하	$630\text{만원} + (\text{총연금액} - 1,400\text{만원}) \times 10\%$
4,100만원 초과	900만원(한도액)

(2) 분리과세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5.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①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②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 연금수령한 날

6.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1) 과세방법: 종합과세 원칙, 단,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가능(공적연금은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함)

(2)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① 공적연금: 매월 연금지급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기본세율 적용). 익년도 1월에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의무 없음(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 있음)
- ② 사적연금: 연금수령시점 또는 연금소득의 종류에 따라 연금지급액의 3%~5%를 원천징수함. 연말정산은 없으며, 확정신고의무 있음.

※[정리] 연말정산 대상 소득과 시기

연말정산 대상 소득	연말정산 시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후원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	다음연도 2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다음연도 1월